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16

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김한규·진선미·장철민

민병덕 · 강훈식 · 김태년

윤준병 • 백혜련 • 박정현

임미애 · 박희승 · 이용우

이재정 · 양부남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광범위함.

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,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 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의 의료 기관(보훈병원을 포함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(안 제7조).

법률 제 호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 따른 진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한다.

제7조제6항 중 "따른"을 "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의 범위,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"부담한다"를 "부담하나,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행 개 정 안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 탁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 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~ ⑤ (생 략)
- ⑥ 제1항과 제2항에 <u>따른</u>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 다만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 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 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

제7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제7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 ① (생 략) 대한 진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 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 다)을 포함한다]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료기관에서 한다. 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(7) -----

- ⑥ -----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의 범위, -----.
- ----- 부담하나, 지방자 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 -----

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	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	
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	